

별표 1 우수향토기업 지정 평가표

* '21(당기), '20(전기)

구분	지표	등급	배점	산출기초	비고
역사성 [10]	업력 (10)	40년이상	10		•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(기준)
		35년~39년	8		
		30년~34년	6		
		25년~29년	4		
		20년~24년	2		
사회적 기여도 [25]	고용인원 증가율 (20)	20%이상	20	$(\text{'21.인원} - \text{'20.인원}) / \text{'20인원} \times 100$	•고용보험 증명서상 가입자(년도말 기준) •고용보험 비가입대상 (국민연금, 건강보 험 가입일자) •증가율 없을 시 0점 처리
		15%이상~20%미만	16		
		10%이상~15%미만	12		
		5%이상~10%미만	8		
		5%미만	4		
	사회기부 참여도 (5)	1,000만원 이상	5	지정기부(정치 및 종교단체 제외)	•기부금 없을 시 0점 처리
		500만원 이상 ~1,000만원 미만	4		
		500만원 미만 ~ 300만원 이상	3		
		300만원 미만 ~ 200만원 이상	2		
		200만원 미만	1		
경제적 기여도 [30]	매출액 증가율 (20)	200%이상	20	$(\text{'21.매출액} - \text{20.매출액}) / \text{'20매출액} \times 100$	•증가율 없을 시 0점 처리
		100%~200%미만	16		
		50~100%미만	12		
		20~50%미만	8		
		20%미만	4		
	부채비율 (5)	50%미만	5	(부채총계/자본총계)*100	•(기준)표준대차대조 표의 손익계산서 - 부채총액 =부채총계 - 자기자본=자본총계
		100%미만	4		
		150%미만	3		
		200%미만	2		
	기업신용 평가 (5)	A이상~BBB+	5		•대·소문자 동일인정 BBB+ = bbb+ •미제출시 0점 처리
		BBB~BBB-	4		
		BB+~BB-	3		
B+~B-		2			
차별성 [35]	기술개발 투자율 (10)	100%이상	10	$(\text{연구개발비} / \text{매출액}) * 100$	•(기준)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- 연구(경상)개발비 •투자없을 시 0점 처리
		75%~100%미만	8		
		50%~75%미만	6		
		20%~50%미만	4		
		20%미만	2		
	신기술 보유현황 (10)	기술인증을 득하고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추천 을 받은기술	5	신기술(NET)·신제품(NEP)인증 특허·실용신안권 등록, ISO인증, 해외인증, 국내인증	•4개까지 인정하되 합 계는 10점을 초과 하지 않음 •특허실용신안 등록 원부에 기재된 전용 실시권까지 인정
		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국·공립 연구기 관 연구완료기술 : 4점 (특허, KT, NT, EM, IT, S/W등록 및 연구개발완 료 기술등)	4		
		실용신안, 의장등록 및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 는 기술	3		
	경영혁신 노력도(15)	자체브랜드 개발(사용)	5		•정성평가
		ESG 개선노력	5		
		직원복지 향상지원	5		

가점사항(3점)	인증관련 (3점)	유망중소기업(시, 타기관), 좋은일터 선정기업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여성친화기업, 장애인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뿌리기업 * 건당 1점씩 최대 3점까지 인정
----------	--------------	---

***사행성, 불건전 업종 및 결격업체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심의기관에서 지정 제외**

별표 2 결격업체 기준

- 최초 공고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*을 받은 기업

* 행정처분 : 경고, 개선명령(시정명령), 영업정지, 영업허가취소, 영업장폐쇄

구 분	심사(반영)여부	비고
<행정처분>		
경 고	심사대상(연도별 무관 2회까지) *단, 처분 이행 완료시	심사제외(3회이상)
개선(시정)명령	심사대상(연도별 무관 2회까지) *단, 처분 이행 완료시	심사제외(3회이상)
영업정지	심사제외	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
영업허가 취소		
영업장 폐쇄		
<과태료, 벌칙>		
과태료, 징역, 벌금	심사제외 - 1회이상, 금액관련 없이	교통법 관련 벌칙(과태료) 제외
<기 타>		
단순고발	심사대상 *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선정	위원회에서 결정 *해명자료는 회사에서 제출
위반 후 처분 진행 중이거나 처리가 안 된 경우	심사제외	
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-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	심사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 *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심사대상	
국세, 지방세 완납실적	체납 또는 미 제출시 심사제외	필수 제출서류

별표 3
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

*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

번호	업종(KSIC-10)	평균부채 비율(%)	제한부채 비율(%)	사업전환 용자
1	A01(농업)	1541.	462.3	924.7
2	A03(어업)	251.4	500.0	1000.0
3	B(광업)	149.0	447.1	894.2
4	C(제조업)	125.3	375.8	751.7
5	C10(식료품)	150.9	425.8	905.7
6	C11(음료)	138.6	415.8	831.6
7	C13(섬유제품(의복제외))	128.9	386.6	773.1
8	C14(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)	131.6	394.8	789.6
9	C15(가죽, 가방 및 신발)	133.6	400.8	801.5
10	C16(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 제외))	165.2	495.7	991.4
11	C17(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)	125.4	376.2	752.4
12	C18(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)	129.0	387.0	774.1
13	C19(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)	131.4	394.3	788.7
14	C20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)	95.8	287.4	574.8
15	C21(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)	65.5	196.5	393.0
16	C22(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)	122.3	367.0	734.1
17	C23(비금속 광물제품)	101.1	303.4	606.8
18	C24(1차 금속)	137.8	413.5	827.1
19	C25(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 제외))	142.8	428.3	856.5
20	C26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)	108.0	323.9	647.9
21	C27(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)	93.5	280.4	560.8
22	C28(전기장비)	110.9	332.6	665.3
23	C29(기타 기계 및 장비)	123.1	369.3	738.6
24	C30(자동차 및 트레일러)	170.5	500.0	1000.0
25	C31(기타 운송장비)	322.5	500.0	1000.0
26	C32(가구)	162.5	487.6	975.3
27	C33(기타 제품 제조업)	113.4	340.2	680.4
28	C34(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)	113.1	339.3	678.5

번호	업종(KSIC-10)	평균부채비율(%)	제한부채비율(%)	사업전환 용자
29	D35(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)	460.7	500.0	1000.0
30	E(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)	130.4	391.2	782.4
31	F(건설업)	100.4	301.2	602.5
32	G(도매 및 소매업)	137.6	412.8	825.7
33	H(운수 및 창고업)	177.9	500.0	1000.0
34	I(숙박 및 음식점업)	315.3	500.0	1000.0
35	J(정보통신업)	123.1	369.4	738.7
36	L(부동산업)	426.5	500.0	1000.0
37	M(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)	122.5	367.4	734.8
38	N(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)	195.7	500.0	1000.0
39	P(교육 서비스업)	171.2	500.0	1000.0
40	R(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)	272.7	500.0	1000.0
41	기타산업	185.1	500.0	1000.0

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용자제한 참조

-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%, 최대 500% 이내(부채비율=부채총계/자본총계)
-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